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신탁법」의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0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익신탁법」의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 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익신탁법」의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개정안은 「공익신탁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u><신설></u>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공익신탁법」</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탁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¹⁾(이하 “공익신탁”이라 함)의 설정·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 의하면 공익신탁을 설정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

1)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함(「신탁법」 제2조)

며,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됨.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²⁾라는 점에서,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제됨.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³⁾, 「기부금품법」 적용의 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어 보임.

「기부금품법」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는 모집방법이 특수하여 동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렵거나⁴⁾, 「기부금품법」의 절차를 따

2)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3) 「기부금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르지 않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⁵⁾, 「기부금품법」 상 기부와 그 목적이 다른 경우⁶⁾ 등에 대해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률>

구분	법률명
①	「정치자금법」
②	「결핵예방법」
③	「보훈기금법」
④	「문화예술진흥법」
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⑦	「재해구호법」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⑪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부금품법」⁷⁾과 달리, 「공익신탁법」⁸⁾은 신탁재산 중 금전을 「신탁

4) 크리스마스절을 판매하는 모집방법에 대해 규정한 「결핵예방법」,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식품으로 모집하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됨.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공동모금 허용, 보건복지위원회의 감독), 「재해구호법」(전국재해구호협회와 행안부장관과 협의, 체계적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이 이에 해당됨.

6)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국민신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이에 해당됨.

7) 「기부금품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법」 9)에 따라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모집방법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보임.

또한, 「공익신탁법」은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취득, 사용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⁰⁾, 「기부금품

-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8) 「공익신탁법」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신탁법」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10) 「공익신탁법」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등”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등에 사용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수탁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기부금품 모집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¹¹⁾, 「기부금품법」 뿐만 아니라 「공익신탁법」에도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익신탁은 모집방법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점¹²⁾, 「공익신탁법」에 모집·사용·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법무부의 관리·감독 체계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이중적인 규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1) 「정치자금법」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보훈기금법」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공익신탁은 공익신탁 상품을 설계(모집·운용·사용 계획 등)하여 법무부 인가를 통해 가능하며, 기부금품과 달리 신탁재산의 운용이 가능함.

참고

「기부금품법」 적용의 예외 사유

예외 법률 (특례기관)	소관부처	예외 인정 사유
①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	선관위	■ 성격의 특수성이 인정 ■ 정치자금 기부 금지, 회계처리·벌칙 등의 장치 마련
② 결핵예방법 (대한결핵협회, 사단법인)	질병청	■ 성격과 모금 방식의 특수성(크리스마스썸 판매) 인정
③ 보훈기금법 (미지정, 보훈부장관 지정)	보훈부	■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대상 사업이 아닌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한정* *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보훈부장관의 지정 필요
④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 989개)	문체부	■ 예술단체 육성 필요성 인정 * 관람료 중 일정액을 징수하는 모금방식 폐지('03.12.)
⑤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외교부	■ 여권발급시에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징수)하는 특수성 인정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법인	복지부	■ 재원의 공동모금 및 중복 배분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특례 인정
⑦ 재해구호법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단법인)	행안부	■ 재난 피해의 효율적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사용(배분) 단일화 필요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신탁법인, 자연환경신탁법인)	환경부 문화재청	■ 국민의 기부,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위탁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자연유산 매입·관리 등 특수성 감안
⑨ 식품등 기부 활성화 에 관한 법률 (푸드뱅크사업자)	복지부	■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식품 특성 감안,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도·감독 등을 받는 사업자에 한해 모집·배분·관리 특례 인정
⑩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 국가장학기금 조성 등 모집목적의 특수성 인정
⑪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자체 기부금 모집 허용

※ 자료 : 행정안전부

문 의 처
02)6788-5337